

2 일 본

1. 품목별 통관/검역 제도

1. 주요 품목별 수입가능 여부

품목명	가능여부	수입요건
쌀가공품	가능	식량법에 적용 납부금필요
토마토	가능	특이사항 없음
사과	가능	특이사항 없음
버섯류	가능	특이사항 없음
돼지고기	제한적가능	위생증 첨부
참치	가능	특이사항 없음
오징어	제한적가능	수입쿼터제 운영
김	제한적가능	수입쿼터제 운영
김치	가능	특이사항 없음
인삼	가능	특이사항 없음
주류	가능	면허신고 필요

2. 품목별 수입요건

1) 쌀 가공품

HS번호 1901 190490110 190490120 190490130

쌀을 주로 한 조제식료품을 수입할 때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에 근거해 농정사무소에 납부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식품 등 수입신고의 수속이 필요함.

1. 관세 분류 관계

관세의 국내 분류에 있어서 쌀가루 등을 함유하는 쌀 조정식료품으로 쌀가루 등의 함유량의 합계가 85%를 넘는 것(케이크 믹스 및 육아식용 또는 식사요법용의 것을 제외함)은 1901항으로 분류됨. 쌀 함유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가열·조리 끝난 조정식료품은 1904항으로 분류됨. 1904항은 아래와 같이 세 분류 됨.

- (1) 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30% 이하의 것 1904.90-110
- (2) 상기(1) 이외로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 1904.90-120
- (3) 그 외의 것 1904.90-130

2.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 관계

쌀의 함유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가열·조리 끝난 조정식료품, 혹은 쌀가루 등을 함유 하는 쌀 조정식료품으로 쌀가루 등의 함유량 합계가 전체의 85%를 넘는 것 (케이크 믹스 및 육아식용 또는 식사요법용의 것을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는 식량법에 의거하여 농정사무소에 「미곡 등 수입납부금 납부신출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해 납부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음. 단지 쌀의 함유량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육, 어, 야채 등 쌀 이외 원료의 비율에 따라서는 납부금의 납입수속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납부금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면 수입하려고 하는 쌀 조정식료품의 모든 원료비율을 세관에 제시하고 문의.

또한 제출하는 서류의 자세한 것은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량부에 문의.

3. 식품위생법 관계

식품 등의 수입수속은 화물을 통관하는 장소의 관할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담당과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시하며 신고서는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심사되며 필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수입이 인정됨.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위생검사실시, 합격」의 도장이 찍히며 검사 불필요한 것에는 「신고제」의 도장이 찍혀, 통관 시에 각각의 날인이 된 「신고확인제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필요함.

쌀을 주로 한 조정식료품을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에 근거하는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음.

또한, 계란, 우유, 밀, 메밀, 낙화생 등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음.

덧붙여 잔류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해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수입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어 있음.

5. 수입 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 「신고확인제 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사본, 「미국 등 수입납부금 납부신출서」의 사본, 납부금의 영수증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는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6.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관계

동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고 있음.

2) 토마토

HS번호 070200

토마토(신선 및 냉장)의 수입수속은 야채(신선, 냉장, 냉동)의 수입수속과 같음. 토마토(신선 및 냉장)의 수입에 있어서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특히 중요한 유해 동식물(병해충)의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덧붙여 화란으로부터의 수입에는 조건이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 신고가 필요함.

1. 관세분류 관계

관세의 국내분류에 있어서 토마토(신선 및 냉장)는 0702.00-000으로 분류됨.

2. 식물방역법 관계

(1) 수입금지 지역 및 요 검사지역

토마토(신선)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지중해굴파리 등의 중요 병해충이 발

생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구체적인 국가 또는 지역 및 병해충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2(수입금지지역, 식물 및 검역 유해동식물)에서 확인.

또한 중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지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구체적인 국가 또는 지역 및 병해충에 대해서는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 「재배지 감사를 필요로 하는 식물 등」에서 확인.

덧붙여 화란으로부터 수입되는 토마토(신선)에 대해서는 「화란왕국으로부터 발송되는 토마토 및 피망의 생과실과 관련되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농림수산성 고시 제81호)에 정하는 것에 따라 화란의 식물방역기관에 의해서 지정 생산지역의 지중해굴파리의 발생에 대해 조사하고 지중해굴파리가 발견되지 않은 지정 생산지역으로 생산되고 한편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이것에 합격했을 경우에 발행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면 수입이 가능함.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발송되어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토마토의 생과실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주)

화란에 대한 수출검사 시에는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확인 후는 상기의 식물검역증명서의 뒷면에 확인자 이름 등을 부기하게 되어 있음. 단지 포장 및 표시는 이하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1) 지중해굴파리의 침입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의해 포장되고 있는 것.
- 2) 포장은 지정생산지역내 화란 식물방역기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포장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
- 3) 각 포장 또는 묶은 포장에는 화란의 식물방역기관에 의한 봉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 4) 포장 또는 묶은 포장에 수출 식물검역이 종료되었다는 취지 및 발송지가 일본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해당표시는 포장의 3면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수입금지국·지역 이외로부터의 수입수속은 식물방역소에 「식물수입 검사 신청서」에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검사신청을 실시함.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부착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함.

(주)

- 1) 훈증 등의 조치는 수입한 항구의 항두지역에 소재한 지정 훈증고에서 전문의 방제업자에 의해 실시하고 비용은 수입자 부담이 됨.
훈증시간은 부착 병해충의 종류에 의해 다르지만 30분부터 3시간 정도임.
(창고에의 반 출입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제외)
- 2) 소독은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청산가스, 혹은 브롬화메틸 훈증으로 실시함.
(해당 표시는, 포장의 3면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식품위생법 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토마토를 수입하려면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검사후에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제」인이 날인되어 반환됨. 또한 특정의 약품을 첨가물(보존료·피막제)로서 사용할 수 있음.

단지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해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제도에 의해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음.

5. 수입 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1 및 2로 취득한 「식물검사 합격증명서」와 「신고 확인제식품등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6.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과대한 경부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고 있음.

3) 사과

HS번호 080810000

사과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특히 중요한 유해동식물(병해충)의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또한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타스마니아,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조건부로 허가되고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신고가 필요함.

1. 식물 방역법관계

- (1) 사과수입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코드린가, 지중해굴파리 등 중요해충의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구체적인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2(수입금지지역, 식물 및 검역유해동식물)에서 확인하고 미국 및 뉴질랜드, 호주의 타스매니아, 프랑스에서의 수입은 조건부로 가능함.
- (2) 수입수속은 「식물수입 검사신청서」에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식물방역소에 제출하고 검사신청을 실시하며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부착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함.

2. 식품위생법 관계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속을 마치고 합격한 상품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심사·검사 후에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제」인이 날인되어 반환됨. 단지 농약의 잔류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나 특정의 약품을 첨가물(보존료·피막제)로서 사용할 수 있음. 사과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다고 하여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동법에 근거해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제도에 의해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음.

4.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1 및 2로 취득한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신고확인제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5. 그 외의 유의 사항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부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버섯류

HS번호 070951 070959 060290011 060290019 071231 071232 071233 071239

버섯류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용한 식물을 해치는 균류는 식물방역법의 검사의 대상으로 해당되나 송이버섯, 키쿠라게, 양송이 등의 식용균은 해당되지 않음. 식용버섯류의 수입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신고가 필요함.

1. 관세 분류 관계

0709류는 생 버섯류, 0602류는 버섯의 균사, 0712류는 건조한 버섯류임. 근년 가마솥 밥의 소재 또는 이러한 가공품의 원료로서 처리된 버섯류도 수입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제20류, 제21류로 구분됨.

2. 식물방역법 관계

버섯에는 「버섯류」와 「버섯균사」가 있으며 식물방역법에 있어서 식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치는 균류는 유해식물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나 인간에게 유용한 균류는 제외되고 있어 검사는 불필요함. 다음의 3항목이 제

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1) 송이버섯, 키쿠라게, 양송이 등의 식용균
- (2) 양조용으로서 사용하는 균류
- (3)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의 약제제조용을 위해 사용하는 균

3. 식품위생법 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해 본 품을 수입하려면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신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버섯류는 종류에 따라 유독한것이 있기 때문에 수입실적이 적은것은 버섯의 학명이나 현지에서의 식용상황, 조리방법 등의 자료를 사전에 갖추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검사에 있어서는 수송·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진드기 등의 곤충이 혼입되어 위반된 사례도 있으며 심사·검사 후에 식품위생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제」인이 날인되어 반환됨. 또한 버섯류 중 송이버섯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다고 하여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또한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 11조 제 항)가 시행되었음.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해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음. 또한 표고버섯(신선식품), 건 표고버섯의 경우는 각각 개별 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 기준에 근거해 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 JAS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음.

5. 특혜관세 관계

특혜수입국 등 (특별 특혜수입국을 포함)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에 확인필요.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로부터 수출 시에 현지국가에 대해 발급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추가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경우는

불필요).

6. 수입 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1 및 2로 취득한 「식물검사 합격증명서」와 「신고 확인제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 허가서가 교부됨.

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관계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고 있음.

5) 돼지고기

HS번호 0203 020630 020641 020649 021011 021012 021019

돼지고기의 수입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는 검사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함.

1. 관세분류 관계

돼지고기는 통상, 반환지육 및 부분육으로 냉장 및 냉동상태로 거래됨.

일부 훈제등 상태의 것도 있으며 (소세지는 16류로 분류됨)

- (1) 익힌것, 찢것, 구운것, 기름으로 튀긴 것 및 그 외 가열에 의한 조리 및 빵가루로 감싼 것, 조미한 것, 고기와 야채를 교대로 꼬치에 찌른 것 등은 조제한 고기로서 16류로 분류됨.
- (2) 귀, 가죽, 내장, 다리 등의 찢꺼기 육으로 식용에 적절한 것은 0206항 또는 0210항으로 분류되고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0511항으로 분류됨.

2. 가축전염병 예방법관계

돼지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는 지정검역물이며 수입에 대해서는 동물 검역소의 검사가 필요함. 동물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1) 수입자는 수입검사신청서(축산물) 및 수출국의 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수출 검사 증명서를 동물검역소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검역소에 있어서는 수입된 돼지고기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의 검사를 실시함.
- (3)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 또한 수입 동물검역에 대해서는 지정항 제도가 취해지고 있어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공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함.
- (4) 소, 돼지, 양 등의 우제류의 고기는 급성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구제역, 우역」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금지지역이 정해져 있음. 또한 지역의 구분에 대해서는 자주 변경이 있기 때문에 관할의 동물검역소에 확인필요함.

3. 식품위생법 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필요가 있음. 검역소에 있어서 심사·검사 후에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제」인이 날인되어 반환됨. 또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음.

(1) 보존기준

섭씨 10도 이하로의 보존을 필요로 함. 단지 냉동품에 있어서는 섭씨 마이너스 15도 이하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첨가물

신선의 돼지고기에는 냉동품을 포함하여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발색제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3)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위생증명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되어 있음. 돼지고기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다고 하여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4) 그 외 규제

잔류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음.

5.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에서 취득한 「수입검역증명서」 및 「신고제식품등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6. 그 외의 유의사항

식육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에 근거하여 전국 식육공정 거래협의회가 업계 자주규제로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고 있음.

6) 참치(신선 또는 냉장)

HS번호 030231 030232 030234 030235 030236 030239

참치(신선 또는 냉장)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신고가 필요함. 또한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신선 또는 냉장)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무역 관리령에 의거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시에 수출국의 확인기관이 발행하는 통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1. 관세 분류 관계

참치(신선 또는 냉장)는 그 종류에 의해 날개다랑어(0302.31호), 황다랑어(0302.32호), 참다랑어(0302.35호), 눈다랑어(0302.34호), 남방 참다랑어(0302.36호), 그 외의 것(0302.39호)로 통계 세분이 나누어져 있음.

2. 수입무역관리령 관계

참치류(신선 또는 냉장)를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무역 관리령에 근거해 통관시 확인이 필요함.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시에 수출국의 확인기관(수출국의 정부직원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권한을 위양한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이 발행하는 통계 증명서(원본)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적도 그리아스, 시에라리온, 볼리비아, 캄보디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참치류는 2호 승인제로 되어있어 주의를 필요로 함.

3. 식품위생법 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참치(신선 또는 냉장)」를 수입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필요가 있음. 검역소에서의 심사·검사 후에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제」인이 날인되어 반환됨. 또한 콜레라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음.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 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동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실시하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5.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로 취득한 「신고확인제식품 등 수입신고서」및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 보험명세서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참다랑어에 있어서는 「참다랑어 통계증명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함.

6. 그 외의 유의사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을 금지하고 있음.

7) 오징어

오징어(뿔오징어를 제외한 활, 신선, 냉장, 냉동, 염장 및 염수에 절인 오징어)는 수입무역관리령 등에 근거하는 IQ품목이며 수입할당을 가진 자만 수입할 수 있음. 건조한 오징어도 동등하게 IQ품목으로 「건조 오징어」의 할당

범위가 필요함.

HS번호 030741010 030741090 030749110 030749190 030749200 030791310
030791390 030799121 030799129 030799220

1.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수입무역관리 령 관계

수입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수입승인·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계서류, 할당수량, 제출처, 제출기한, 원산지의 국명 리스트 등은 할당이 발표되는 경제산업성 공보 및 일본무역진흥회의 통상 홍보에 게재됨.

할당에는 (1)상사할당, (2)합작할당, (3)어업자할당, (4)수요자할당, (5)선착순할당의 5개가 있으며 새롭게 수입하려하는 자는 (5)에 의해 할당을 취득하는지 혹은(3) 또는 (4)에 의해 할당을 받은 자에게 발주를 받을 필요가 있음.

가공품 상태 등에서 오징어의 종류가 외관으로 모를 때는 구입 전에 수출자에게 종류, 학명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을 들여와 IQ품목에 해당 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화물을 일본에 반입한 후에는 수입 할당을 취득해도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몽고오징어는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음.

2. 식품위생법 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 「식품등 수입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음.

- (1) 수출된 지역에 따라서는 콜레라 검사를 받는 일이 있음.
- (2) 오징어가공품을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3) 오징어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다고 하여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음.
- (4)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양식오징어나 가공품의 경우는 항생물질, 표백제 그 다

른 약제나 식품첨가물의 사용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함.

검역소에서의 심사·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제」 인이 날인되어 반환됨.

3. 수입통관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로 취득한 「신고확인제식품등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 보험 명세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수출국에 따라 특혜관세, EPA 관세의 적용이 있으며 특혜관세, EPA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세관에서의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4. 기타 국내 관련법

(1)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동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2)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고 있음.

8) 김

「김」은 수입할당 품목에 해당되며 건김 : HS번호 1212.20-1-(1) 및 1212.20-1-(2), 무당의 맛김(여승 김) : 2106.90-2-(2) -E-(b)과 김조제품(구운 김을 포함하고 무당의 맛김을 제외) : 2106.90-2-(2) -E의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8년도의 수입발표(2009년 2월16일부 수입발표 제17, 18, 19호)에 따라서 경제산업성에 수입할당을 신청함. 상기 3품목에 대해 별개의 수입발표가 되고 있어 각각 신청이나 할당 형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할당 매수가 가장 많은 「건김」에 대해 신청자자격과 할당 형식은 아래와 같음.

1. 건김의 신청자 자격과 할당형식의 개요

(1) 상사할당 A1(한국 실적할당) : 과거에 「김」의 수입발표에 근거하여 상사할

당을 받아 2008년 2월1일부터 2009년1월31일까지의 사이에 건김(특정국가로부터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음)의 수입통관의 실적을 가지는 자로서 건김의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확실한 자.

- (2) 상사 할당 A2(중국 실적할당) : 과거에 「김」의 수입발표에 근거해 상사할당을 받아 2008년 2월1일부터 2009년 1월31일까지의 사이에 건김(특정국가로부터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음)의 수입통관의 실적을 가지는 자로서 건김의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확실한자.
- (3) 수요자 할당 : 확실히 수입을 실시하는 사람으로서 수산청장관으로부터 발주 한도 내시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해당자로부터 확실히 수입되는 수량의 발주를 받은 자.
- (4) 선착순 할당 : 상기의 1. (1), (2) 및 (3)의 어느 쪽이든 신청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2008년 2월1일부터 2009년 1월31일까지의 사이에 관세율표 제1부에서 4부까지 속하는 화물(식료품에 한정)을 10만달러 이상 수입통관한 실적을 가지며 건김의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한 2009년 3월9일까지 왕복엽서로 경제산업성에 대해서 신청등록을 실시하여 신청등록번호를 받은자.

2. 서면신청 수속개요

- (1) 제출처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 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물(수산물반) 03-3501-1151 (내선 3261)
- (2) 신청 접수 기간('09년의 경우) :
 - 1) 상사할당 A1 또는 A2에 해당하는 사람 : 2009년 3월 6일 오전 및 오후
 - 2) 수요자할당에 해당하는 사람 : 2009년 3월 6일 및 2009년 3월7일부터 2010년 1월 6일까지의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 3) 선착순 할당에 해당하는 사람 : 2009년 3월 25일부터 2009년 9월 24일까지

3. 전자 신청수속

상사할당 A1 또는 A2의 추가신청 및 선착순 할당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자신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자 신고를 우송해 전자신청 수속을 실시할 수 있음.

- (1) 접수창구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물(수산물반)
- (2) 신청접수기간 : 2. (2)의 1)~3)의 기간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 내시서의 교부 : 2009년 2월16일부 20水魚제2090호 「「건김」 발주한도 내시서 발급요령」으로 결정되어 있음.

5. 2009년 2월16일부의 수입발표에 의한 「건김」의 수입할당 한도수량은 다음과 같음. 전형(면적이 430평방 센치 이하의 것)을 1매로 하여 전형이상 크기의 것 또는 재단한 것의 경우는 해당 김을 전형으로 환산한 매수, 덩어리 상태의 것 등 종이상태가 아닌 것은 해당의 김 3g당 전형1매로 환산한 매수로 함.

(1) 상사 할당 A1(한국 실적 할당) : 9,000만매

(2) 상사 할당 A2(중국 실적 할당) : 1억3,300만매

(3) 수요자 할당 : 3억3,200만매

(4) 선착순 할당 : 500만매

합계 : 5억 6,000만매

6. 무당 맛김의 할당 수는 합계 3억4,400만매임. 또한 김의 조정품(무당 맛김을 제외)의 할당 수는 합계 1억4,800만매

7. 무당의 맛김과 김조제품의 신청자자격요건, 할당내용, 신청 접수기간이나 시간, 접수장소, 신청서류, 전자 신청수속, 내시서 교부나 할당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그 외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계통상 공시의 수입 발표(참조 URL)를 참조.

관계 통상 공시:

- 수입발표 제17호 「건김」의 수입할당에 대해: 2009년 2월 16일
- 수입발표 제18호 「무당 맛김」의 수입할당에 대해: 2009년 2월 16일
- 수입발표 제19호 「김 조정품(무당의 맛김을 제외)」의 수입할당에 대해: 2009년 2월 16일

9) 김치

HS 번호 200599919(야채 조제품 1개 중량이 10kg 이하, 기밀용기들이)

- 기본세율 12.8%, 협정세율 12%, 특혜세율 9.6%

HS 번호 200599999(기타)

- 기본세율 : 9.6%, 협정세율 9%

김치의 수입규제에는 식품위생법의 잔류농약 규제(배추, 무, 오이, 마늘등의 원료 야채에 대한 것)와 솔빈산(농산물 절임류에 보존료로서 사용)의 최대사용 한도기준이 있음. 또한 국내 판매할 시의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함.

김치의 주원료 채소에 대한 잔류농약 포지티브제도로써 배추에 사용되는 농약 316품목, 무에 사용되는 농약 308품목, 오이에 사용되는 농약 348품목, 자소(허브)에 사용되는 농약 373품목, 마늘에 사용되는 농약 302품목, 건조 스파이스 과실(당겨자)에 사용되는 농약 411품목에 대해서 각 농약의 최대잔류 한도기준이 정해져 있음. 최대 잔류한도량은 각각 농약의 종류에 의해 가장 까다로운 것은 「불검출=검출해서는 안 된다」와 0.001ppm로부터 가장 완만한 것에는 400ppm까지 있으며, 대부분 농약에 대해서는 최대 잔류한도량이 0.001ppm에서 5.0ppm의 범위에서 야채의 규격기준으로서 정해져 있음. 또한 소금절이에 조미료나 향신료를 더한 채소 절임류에 보존료로 해서 사용되는 솔빈산의 최대사용 한도량은 채소절임의 총중량 1kg당 1.0g으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김치수입에 대해서는 수출자인 한국의 메이커가 현지공적기관(수출국 공적 검사기관리스트 URL 참조)으로 주원료 야채에 대한 농약잔류의 측정검사증명서와 가공된 김치가 함유하고 있는 솔빈산의 측정검사증명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수입발주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화물이 도착해도 수입허가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모두 수입자의 책임과 경비부담으로 그 화물을 폐기하게 됨.

가공식품(김치)의 품질표시기준

- 1) 명칭(농산물 애채절임, 김치등을 표시)
- 2) 원재료명(총중량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높은순서에 표시)
- 3) 식품첨가물명(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중량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높은 순서에 「물질명, 또는 보존료나 감미료 등 8종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보존료(솔빈산K)」, 「감미료(스테비아)」과 같이, 용도명과 물질명」을 표시)

- 4) 내용량(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해 김치만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
- 5) 유효기한(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등을 기본으로 해당식품 등의 기한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들에게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생물시험이나 이화학시험 및 관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기한을 표시. 제조일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월·일, 3개월 이상은 년·월로 표시)
- 6) 보존 방법(개봉 후는 요 냉장 등)
- 7) 원산국명(한국)
- 8) 수입자명·주소 및 고객의 문의처(손님 상담창구), 전화번호, 경고표시 등.

10) 인삼.인삼차

HS번호 121120 130219 210690 300390 300490

고려인삼(일본에서 부르는 이름 : 오타네 닌징)이나 고려인삼차를 식품으로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속이 필요함. 또한 효과효능을 표방한 의약품으로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제가 있음. 그 외, 식물 검역법에 근거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1. 관세분류 관계

관세분류로 고려인삼 및 고려인삼차로 분류됨.

- (1) 의료용 기타 이것에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등 1211.20-000
- (2) 액즙 및 엑기스 1302.19호
- (3) 조제품 2106.90호
- (4) 의약품 (2이상의 성분으로 되어 포장하지 않은 것) 3003.90-020
- (5) 의약품 (소매용의 형상 혹은 포장한 것 등) 3004.90-023

2. 식품위생법 관계

고려인삼이나 고려인삼차를 식품으로서 수입판매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후생노동대신 관할의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라고 관계서류

를 신고할 필요가 있음. 검사불요의 경우에는 신고서 복사에 「신고제」, 검사 실시 후 합격했을 경우에는 「위생검사 실시, 합격」 인이 압인되어 반환되기 때문에 통관 시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근거하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주의를 필요로 함.

3.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식품으로서 수입판매 하는 경우, 동법의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음.

4. 약사법관계

2005년 4월부터 개정약사법이 시행되고 있음.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종으로서 수입판매 하는 경우는 약사법에 근거하는 제조판매업의 허가 와 품목마다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덧붙여 수입 후, 포장·표시·보관을 실시해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는 아울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단지 개인용으로서 수입하는 경우로 인정된 수량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에 근거하여 용기에 제조판매업자명, 명칭, 제조번호 또는 제조 기호 등 약사법에 의한 필요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 및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5. 식물방역법 관계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식물에 있어서 유해한 병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음. 고려인삼은 원칙으로서 검역의 대상이 되지만 가공정도에 의해 불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음. 또한 식물방역법상의 발송(경유)지역별의 수입 금지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흙이 부착하고 있으면 수입 금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게 됨. 고려인삼차는 가열처리

등에 의해 병해충의 부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져 원칙으로서 검역검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가공의 정도에 의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검역소에 확인필요.

화물도착 후, 소관의 식물검역소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식물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음. 합격했을 경우에는 「식물 수입허가증명서」가 교부됨

6.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로 취득한 관계서류,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에 있어서의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관계

동법에 의해 과대한 경부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고 있음.

11) 주류

HS번호 220300 2204 2205 2206 2208

알코올음료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근거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소주: HS번호 2208.90-129(에칠알콜 및 증류수 기타)관세율: 16%(협정)

또한 식품위생법 및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표시의무가 있음.

1. 알코올음료의 범위

알코올음료는 알코올 함유량으로 분류됨.

관세분류에서는 0.5%이하의 「음료수」라고 여겨짐.

식품위생법에서는 1%이상의 것으로 여겨져 1%미만은 「음료수」라고 여겨짐.

주세법에서는 1%이상의 것으로 여겨짐.

2. 식품위생법 관계

(1) 수속

수입업자가 「알코올음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그 화물이 통관하려고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창구에 제출하여야함.

특히 알코올음료와 관계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에는 주의가 필요함.

예 : 코리니린산염, 초산칼륨 또는 초산나트륨, 이산화 유황, 솔빈산칼륨 및 솔빈산, 피로 아황산 나트륨

검역소에서 위생검사가 불요로 여겨진 것은 수입신고서에 「신고제」인 취지의 스탬프가 날인되어 필요하게 된 것은, 「신고제」의 스탬프와 함께 위생검사에 합격한 취지의 스탬프가 날인되고 그 사본이 반환됨.

(2) 식품위생법상의 표시

「명칭」, 「알코올 분」, 「수입자 이름 및 영업소의 소재지」, 「사용한 식품첨가물」등을 정해진 방법에 의해 보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 수입자에게 의무화되어있음.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주세법 관계

(1)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 수입업, 판매업 또는 판매 대리업을 하려고 자는 주세법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하며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근처의 세무서(주류 지도관)에 문의필요.

(2)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

1) 수입자는 그 주류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수납과 창구에 「표시방법 신고서」 2통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에 「주류의 종류」, 「알코올 분」,

「용기의 용량」 등에 대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류용기에 표시할 의무가 있음.

- 2) 상기 신고 시의 제출서류는 「주류 판매 면허증의 원본 및 부분」, 「회사의 상표 등기부 등본」 임.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해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 안에서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음.

5.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로 취득한 관계서류,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 명세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세관에 있어서의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6. 특혜관세 관계

특혜수입국 등(특별 특혜수입국을 포함)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에 확인필요.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현지로부터 수출시에 현지국에 대해서 발급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총금액이 20만엔이하의 경우는 불요).

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관계

동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고 있음.

또한 동법에 근거해 수입위스키와 수입맥주는 공정경쟁 규약이 정해져 있음. 이것은 반드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만 준수하도록 지도가 있음.

8. 자원유효이용 촉진법(리사이클법) 관계

알코올 음료 등의 주류에 관해서는 알루미늄캔, 스틸캔, 패트병은 재료 식별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음. 자세한 것은 경제산업성에 문의.

9.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관계

동법에 근거해,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도 병 등의 용기폐기물의 재상품화의 의무를 가짐

※ 주류의 수입·판매

1. 주세법 제2조에 의해 알코올 도수가 1%이상인 음료를 주류라고 하며 수입에 제한은 없음. 주류의 판매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서 판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판매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있음. 스스로 수입한 주류를 도매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주류 도매업 면허」가 필요함. 소매판매를 하는 경우는 「일반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또한 통신판매에 의해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가 요구됨.
2. 상기 3종류 면허의 주류 판매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수입주류 도매업 면허로는 수입되는 주류를 주류판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업자에게 도매가 가능함.
 - (2) 일반주류 소매업 면허로는 판매소에 대해 원칙으로서 모든 품목의 주류소매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는 할 수 없음.
 - (3) 통신판매 주류소매업 면허로는 2도도부현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이나 카탈로그의 송부 등의 방법에 의해 일정한 주류를 소매할 수 있음.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의 제한이 있음.
 - 1) 전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품목마다의 과세 이출수량이 모두 3,000킬로리터 미만의 제조자가 제조하는 국산주
 - 2) 수입주류
3.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충분한 지식, 경영능력 및 판매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된 자, 또는 이러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법인으로 주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면허요건의 모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됨. 수입 주를 포함한 주류의 판매를 검토하는 경우는 판매지의 관할세무서를 담당하는 주류지도관에게 필요한 면허신청이나 그 외의 수속에 대해 상담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되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함.

2. 자료출처 및 사이트

☐ 쌀가공품

- 수입 무역관리령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http://www.meti.go.jp/>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식량법) : 농림수산업성 종합식료국
식량부계획과 <http://www.maff.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http://www.mhlw.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http://www.jftc.go.jp/>

☐ 토마토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업성 소비 안전국 식물 방역과 <http://www.maff.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http://www.mhlw.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표시 규격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업무 창구 :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html>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 <http://www.maff.go.jp/j/syouan/index.html>
- (사) 일본수입식품 안전추진협회(안전·안심인 수입식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
<http://www.asif.or.jp/import1.htm>
- (사) 일본 농림규격협회(JAS 제도와 관계 법령) :
<http://www.jasnet.or.jp/rule/index.html>
- 참고자료
수출국 「대한민국」 공적 검사기관리스트(2008년9월19일 현재) :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한도량 일람표 (2008년7월24일 갱신) :
<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 사과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물 식물방역소 <http://www.pps.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 계
<http://www.mhlw.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
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버섯류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 잠정조치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http://www.maff.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
국 표시 규격과 <http://www.maff.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http://www.mhlw.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돼지고기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http://www.maff.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http://www.mhlw.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참치

- 수입무역 관리 령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http://www.meti.go.jp/>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 계
<http://www.mhlw.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오징어

- 수출입 통관수속이나 세 번·세율 등에 관한 문의 (세관 상담창구)
<http://www.customs.go.jp/question2.htm>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수속에 대해 (후생노동성 검역소)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htm>
- 식품첨가물 리스트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ten/index.html>
-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일본식품 화학연구 진흥재단)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n>
- 상품의 표시제도 (알레르기 표시등)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hyouji/index.html>

□ 김

- 일본무역진흥회 데일리 「통상홍보」 2009/02/16(통상 공시):
<http://www.jetro.go.jp/notice/announcement>

□ 김치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최종개정 : 2007년3월30일 법률 제8호) : <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O175.html>
-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개정2008년7월23 일본 농민조합숲수산성 고시 제1167호) :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2.pdf

- 식품위생법(최종개정 : 2006년6월7일 법률 제53호) :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233.html>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최종개정 : 2008년7월4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
<http://law.e-gov.go.jp/htmldata/S23/S23F03601000023.html>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최종개정 2008년5월2일 법률 제29호) :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134.html>
- 계량법 : <http://law.e-gov.go.jp/htmldata/H05/H05SE249.html>

□ 인삼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http://www.mhlw.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 약사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총무과 <http://www.mhlw.go.jp/>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주류

- 관세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정률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관세 잠정조치법 : 세관 <http://www.customs.go.jp/>
- 주세법 : 재무성 국세청 주세과 단체 기업계 <http://www.nta.go.jp/>
-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에 관한 법률 : 재무성 국세청 주세과 단체 기업계
<http://www.nta.go.jp/>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 (리사이클법) :
경제산업성 산업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http://www.meti.go.jp/>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경제산업성 산업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http://www.meti.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http://www.mhlw.go.jp/>
- 주세법 : <http://law.e-gov.go.jp/htmldata/S28/S28HO006.html>
- 주세법시행령 :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SE097.html>

- 국세청 과세부 주세과 : <http://www.nta.go.jp/>
- 일본양주수입협회 : <http://www.youshu-yunyu.org/>
- 일본수입와인협회 : <http://importers-wine.jp/>

3. 검역/세관 등 관련기관 현황 및 연락처

☐ 쌀가공품

-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량부 계획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03-3501-0538
<http://www.meti.go.jp/>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03-5253-1111
<http://www.mhlw.go.jp/>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토마토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5253-1111 <http://www.maff.go.jp/>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maff.go.jp/pps/>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03-5253-1111

<http://www.mhlw.go.jp/>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사과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pps.go.jp/>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03-5253-1111 <http://www.mhlw.go.jp/>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버섯류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maff.go.jp/pps/>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03-5253-1111 <http://www.mhlw.go.jp/>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돼지고기

- 농림수산업성 동물검역소(축산물 검역과) 045-201-9478
<http://www.maff.go.jp/aqs/>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 계
03-5253-1111 <http://www.mhlw.go.jp/>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전국식육 공정거래협의회 03-5563-2911

□ 참치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03-3501-1511 <http://www.meti.go.jp/>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 계
03-5253-1111 <http://www.mhlw.go.jp/>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농림수산업성 수산청 원양과 해양어업 자원관리반 원양과

03-3502-8111 <http://www.jfa.maff.go.jp/>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오징어

○ 수산물관계의 수입할당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농수산물 03-3501-0532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marine_products/index.html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1.pdf

○ 소비자청 (03-3507-8800) <http://www.caa.go.jp>

☐ 김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물(수산물)
03-3501-1151 (내선 3261)

☐ 인삼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총무과 03-5253-1111 <http://www.mhlw.go.jp/>

○ 각 도도부현 약무 주관과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심사업무부 업무제일과
03-3506-9437 <http://www.pmda.go.jp/>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maff.go.jp/pps/>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관동 신에츠 후생국 048-740-0800
<http://kouseikyoku.mhlw.go.jp/kantoshinetsu/>
- 킨키 후생국 06-6942-4096 <http://kouseikyoku.mhlw.go.jp/kinki/>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주류

-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 후생 노동성 의약 식품국 식품 안전부 기획 정보과
03-5253-1111 <http://www.mhlw.go.jp/>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 재무성 국세청 주세과 기업 단체세 <http://www.nta.go.jp/>
-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03-3501-1511
<http://www.meti.go.jp/>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 일본 양주 수입 협회 03-3503-6505 <http://www.youshu-yunyu.org/>